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42
----------	-----

2025. 1. 24.(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박진희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5년 1월 10일

다. 회부일자: 2025년 1월 14일

라. 상정일자: 2025년 1월 21일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 정의(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독서문화 진흥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추진사업(안 제5조)
- 실태조사(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포상(안 제8조)
- 시행규칙(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조례 제안 이유 검토

- 정부는 지난 2024년 4월 18일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독서습관 형성·유지 지원’, ‘독서환경 개선’, ‘독서문화 진흥기반 고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4대 추진전략, 12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2024~2028)’을 발표함
- ‘독서환경 개선’ 추진전략에는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독서접점과 독서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독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 ‘독서습관 형성·유지 지원’ 추진전략에는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부모 대상 독서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육·교육 기관에 독서매개 인력을 파견하거나 ‘늘봄학교’에 공공도서관·지역서점과 연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입 방안이 주요내용으로 담겨 있음
- 교육부도 학생 주도의 독서습관 형성과 독서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4월 23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를 구축하고, 다양한 형태의 독서교육 콘텐츠를 생성·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독서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3일에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2024~2028)을 발표하고 충청북도교육청 독서교육 핵심정책인 ‘언제나 책봄’, ‘여름·겨울방학 독서교실’, ‘찾아가는 작가 강연’, ‘꿈의 책버스’, 등 다양한 독서문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485개 학교도서관과 12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서점을 이용하여 도서를 구입하고 있음

<표 1>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지역서점 도서구입 현황(기준: 2024. 12.)

(단위: 천원)

지역	기관명	지원예산
청주	충청북도교육도서관	383,000
충주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108,000
제천	제천학생회관	18,000
보은	보은교육도서관	12,600
옥천	옥천교육도서관	21,600
영동	영동교육도서관	21,600
진천	진천교육도서관	18,000
괴산	괴산교육도서관	24,318
증평	증평교육도서관	27,000
음성	음성교육도서관	30,060
금왕	금왕교육도서관	32,400
단양	단양교육도서관	12,420
총 액		708,998

<표 2>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현황(기준: 2024. 12.)

구분	급	학교수	학교 도서관수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이용	미이용
2024	초	267	263	263	
	중	129	129	129	
	고	84	84	84	
	특수	11	11	10	1
	계	491	487	486	1*

※ 학교도서관 미설치교:4교(행정초, 종곡초, 성암초, 심천초) *꽃동네 학교

<표 3> 충청북도 학교도서관 지역서점 도서구입 현황(기준: 2024. 12.)

(단위: 천원)

지역		지원예산
청주교육지원청		2,393,495
충주교육지원청		654,672
제천교육지원청		395,880
보은교육지원청		149,816
옥천교육지원청		172,699
영동교육지원청		190,494
진천교육지원청		291,371
음성교육지원청		344,158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	158,267
	증평	125,814
단양교육지원청		115,389
합계		4,992,055

※ <표1, 2, 3>자료출처: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

- 그러나 이와 같은 충청북도교육청의 독서문화 진흥 정책과 세부 사업들은 이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어, 충청북도교육청의 독서문화 진흥정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체계적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1개 시도교육청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첨부자료 1)
-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지역서점과의 협력적 노력을 통하여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규정 사항들을 담은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항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문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 제1조에는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와 학교 독서문화 진흥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와 의미를 함축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한 “독서문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역서점”에 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함
 - － “독서문화”는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지역서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의2제1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현재 충북에는 총 55개의 충청북도 인증 지역서점이 있고(첨부자료 2), 486개의 학교도서관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12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음
- 안 제3조에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정책 수립·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함
 - －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와 제10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학교의 독서문화진흥’ 규정¹²⁾에 근거하여 학교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 등 지방교육자치의 장인 교육감에게도 이에 준하는 책무가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 같은 측면에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충청북도교육청의 독서문화 진흥정책 실현에 대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 본 조항은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4조에는 독서문화 진흥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과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이는 지역서점과 협력을 통한 충청북도교육청의 독서문화 진흥정책 및 세부 사업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5조에는 독서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

1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3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23. 10. 31.>

제10조(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제목개정 2023. 10. 31.]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등의 사업을 지역서점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함

- 지역서점과 연계한 독서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예산확보와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안 제5조의 규정은 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 경영 안정화 및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타당한 규정이라 판단됨

○ 안 제6조는 독서문화 주간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독서 활동과 독서문화 조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타당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7조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

- 제5조 추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과 추진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역서점과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정책을 개선·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됨

○ 안 제8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역서점과 연계한 독서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 등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서점이 독서 판매 외에 독서교육·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가 요구됨
- 따라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본 조항은 지역서점과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청과 학교, 지방자치단체, 지역서점 관련 협회나 조합 등 유관기관 및 단체 상호 간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타당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9조에는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학교의 내실있는 독서문화 진흥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서점의 경영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독서문화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켜 독서문화 진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규정이라 사료됨
 - 다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실효성 있는 포상이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 기준과 방법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검토 의견

- 정부는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¹³⁾ 수립·시행과 ‘지자체·교육청 소속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활용 권고’ 공문¹⁴⁾을 전국 시도 및 시도교육청에 발송하며 지역서점 경영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이 같은 정부 정책 방안에 따라,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기여하고, 지역서점 활성화와 학교 독서문화의 상생·발전을 추구하며, 지역서점과 연계한 충청북도교육청의 독서문화 진흥 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13)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독서진흥 기본계획(2024~2028)’

14)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153호(2015.1.15.) 공공도서관 등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 및 관련 지침 안내 공문,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700호(20203. 16) 지역서점 우선구매 협조 요청 공문

- 본 조례안은 총 본칙 10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칙 조문에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정책 추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사업, 독서문화 주간 지정·운영,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주요내용들은 앞서 조문별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조문 체계도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법리적 측면에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 조례 제정 입법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된 바,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
- 다만, 지역서점과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과 추진 사업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서점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지역서점 협회나 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지역서점과 연계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과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첨부 자료 1】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2025. 1. 기준)

연번	시도	조례명	제정·개정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2023.8.4.	일부개정
2	경기	경기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2020.7.15.	타법 개정
3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2021.5.6.	제정
4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4.11.	제정
5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서점 협력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2023.12.29.	일부개정
6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5.22.	일부개정
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2023.12.18.	일부개정
8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조례	2021.12.29.	제정
9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9.23.	일부개정
10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2022.2.16.	타법개정
11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12.30.	제정

※ 자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 자료 2】 충청북도인중 지역서점 현황(2024. 8. 기준)

연번	시군명	상호명	대표자	주소	인증 유효기간	비고
1	청주시	(주)휘계문고	이*호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6 (문화동)	2023. 7. 11. ~ 2025. 7. 10.	
2	청주시	고려서점	방*석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 180-2 (울랑동)	2023. 7. 11. ~ 2025. 7. 10.	
3	청주시	꿈꾸는책방	김*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42 (북문로2가)	2023. 7. 11. ~ 2025. 7. 10.	
4	청주시	대창서점	정*현	청주시 청원구 사똥로 46 (울랑동)	2023. 7. 11. ~ 2025. 7. 10.	
5	청주시	발산문고	신*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9-2	2023. 7. 11. ~ 2025. 7. 10.	
6	청주시	발산문고	김*명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03 1층 103호(신봉동)	2023. 7. 11. ~ 2025. 7. 10.	
7	청주시	북메이커	김*형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102번길 32 (사창동)	2023. 7. 11. ~ 2025. 7. 10.	
8	청주시	샘터서적	최*원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30-1 (북대동)	2023. 7. 11. ~ 2025. 7. 10.	
9	청주시	세종서점산남점	김*숙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49 (산남동)	2023. 7. 11. ~ 2025. 7. 10.	
10	청주시	세종서점하북대점	김*숙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54 (북대동)	2023. 7. 11. ~ 2025. 7. 10.	
11	청주시	실표서적	한*구	청주시 상당구 충고개로141번길 13-10 202, 203, 204호 (용암동)	2023. 7. 11. ~ 2025. 7. 10.	
12	청주시	열린문고	임*순	청주시 서원구 북대로 32 102호(개신동,드림빌딩)	2023. 7. 11. ~ 2025. 7. 10.	
13	청주시	오송서점	이*정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65-33 2층	2023. 7. 11. ~ 2025. 7. 10.	
14	청주시	우리문고	이*길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9번길 15 (남문로2가)	2023. 7. 11. ~ 2025. 7. 10.	
15	청주시	창신서점	최*상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27번길 44 2층(수곡동)	2023. 7. 11. ~ 2025. 7. 10.	
16	청주시	홍문당서적	민*기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07번길 39 (분평동)	2023. 7. 11. ~ 2025. 7. 10.	
17	청주시	홍문당서적금천점	김*순	청주시 상당구 충고개로 324 창영빌딩1층(금천동)	2023. 7. 11. ~ 2025. 7. 10.	
18	청주시	홍문당서적용암점	민*근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72 (용암동)	2023. 7. 11. ~ 2025. 7. 10.	
19	청주시	문화서림	이*미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2023. 7. 11. ~ 2025. 7. 10.	
20	청주시	아이꿈사랑	김*홍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312 장자현대상가 103호	2023. 7. 11. ~ 2025. 7. 10.	
21	청주시	유신상사	신*선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15	2023. 7. 11. ~ 2025. 7. 10.	
22	청주시	한샘서점	배*양	청주시 서원구 천석로 12	2023. 7. 11. ~ 2025. 7. 10.	
23	청주시	시트북스토어	박*향	청주시 흥덕구 송화로 108번길 55, 2층	2023. 7. 11. ~ 2025. 7. 10.	
24	청주시	신안종합상사	신*호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76(수곡동)	2024. 8. 7. ~ 2026. 8. 6.	
25	청주시	청주 가람	강*범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35번길 47(비하동)	2024. 8. 7. ~ 2026. 8. 6.	
24	충주시	책마을	허*희	충주시 연원17길 1	2023. 7. 11. ~ 2025. 7. 10.	
25	충주시	광명서점	이*득	충주시 예성로 233 (교현동)	2023. 7. 11. ~ 2025. 7. 10.	
26	충주시	문학사	김*환	충주시 예성로 167 (성서동)	2023. 7. 11. ~ 2025. 7. 10.	
27	충주시	문화당서점	장*완	충주시 금릉로 58 (칠곡동)	2023. 7. 11. ~ 2025. 7. 10.	
28	충주시	북적북적	권*길	충주시 사직로 227 북적(성내동)	2023. 7. 11. ~ 2025. 7. 10.	
29	충주시	이학사	이*학	충주시 충인1길 52 (충인동)	2023. 7. 11. ~ 2025. 7. 10.	
30	충주시	책이있는글터	이*호	충주시 국원대로 191 (금릉동)	2023. 7. 11. ~ 2025. 7. 10.	
31	충주시	한샘서적	장*분	충주시 지현천변1길 51 (지현동)	2023. 7. 11. ~ 2025. 7. 10.	
32	충주시	청솔서점	원*국	충주시 동수11길 33	2023. 7. 11. ~ 2025. 7. 10.	
33	충주시	온동네북	류**	충주시 국원초5길 58 (연수동)	2023. 12. 14. ~ 2025. 7. 10.	
34	충주시	북적북적2	류**	충주시 남산로 60-1 (용산동)	2023. 12. 14. ~ 2025. 7. 10.	
35	제천시	경복서점	송*주	제천시 의림대로 88 (중앙로1가)	2023. 7. 11. ~ 2025. 7. 10.	
36	제천시	대학서점	김*순	제천시 의병대로 59-1 (명동)	2023. 7. 11. ~ 2025. 7. 10.	
37	제천시	중앙서점	정*근	제천시 청전대로 188 (장락동)	2023. 7. 11. ~ 2025. 7. 10.	
38	제천시	이문서점	이*우	제천시 의림대로 114-4	2023. 7. 11. ~ 2025. 7. 10.	
39	제천시	안녕,책	이**	제천시 용두대로 36길 21 (미당리)	2023. 12. 14. ~ 2025. 7. 10.	
40	보은군	문화서점	채*식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06	2023. 7. 11. ~ 2025. 7. 10.	
41	보은군	청미서림	김*희	보은군 보은읍 보은로 112	2023. 7. 11. ~ 2025. 7. 10.	
42	옥천군	명륜당서점	이*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36-1	2023. 7. 11. ~ 2025. 7. 10.	
43	옥천군	동아서적	천*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57-3	2023. 7. 11. ~ 2025. 7. 10.	
44	옥천군	명륜당서점	이*범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83, 새마을회관 1층	2023. 7. 11. ~ 2025. 7. 10.	
45	영동군	중앙서점	나*석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16-2	2023. 7. 11. ~ 2025. 7. 10.	
46	괴산군	문화잇다	천*한	괴산군 청천면 청천10길 4	2023. 7. 11. ~ 2025. 7. 10.	
47	괴산군	중앙서림	박*규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2길 57	2023. 7. 11. ~ 2025. 7. 10.	
48	괴산군	숲속작은책방	김**	괴산군 칠성면 명태재로미루길 90 (사은리)	2023. 12. 14. ~ 2025. 7. 10.	
49	음성군	한솔문고	남*분	음성군 금왕읍 무곡로 218-1	2023. 7. 11. ~ 2025. 7. 10.	
50	음성군	충북서림	이*길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21 1층	2023. 7. 11. ~ 2025. 7. 10.	
51	증평군	동아서림	이*준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00	2023. 7. 11. ~ 2025. 7. 10.	
52	진천군	진명서림	이*지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56	2023. 7. 11. ~ 2025. 7. 10.	
53	진천군	진천서점	권*자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93-1	2023. 7. 11. ~ 2025. 7. 10.	
54	단양군	중앙서림	이*훈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293	2023. 7. 11. ~ 2025. 7. 10.	
55	단양군	늘푸른서점	박**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280 (도전리)	2023. 12. 14. ~ 2025. 7. 10.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4.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독서문화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독서문화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 진흥 사업 개발
3. 독서문화 진흥 사업 지원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및 글쓰기 등 독서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2.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
3.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6조(독서문화 주간 지정·운영)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실천 증진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독서문화 진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5조 추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4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3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23. 10. 3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5., 2023. 10. 31.>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 18., 2023. 10. 31.>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약칭: 출판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9호, 2023. 8. 8., 일부개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 도서관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나. 육군·해군·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다.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사업 추진

2. 비용 발생 요인

- 지역서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 지역서점 협력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비

3. 관련조문

- 안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 안 제5조(사업)
- 안 제6조(독서문화 주간 지정·운영)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 산출내역의 단가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의 운영비·자산취득비의 기준단가로 하며 지역서점 협의체 운영, 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진흥사업 운영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함
(※ 향후 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 진흥 활성화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독서문화진흥 사업 (독서·글쓰기, 독서동아리)	14,000	19,600	19,600	33,600	33,600	120,400
지역서점 협의체 운영	2,400	3,200	3,200	5,200	5,200	19,200
합계	16,400	22,800	22,800	38,800	38,800	139,600

○ 독서문화진흥 사업비 (독서, 글쓰기, 독서동아리)

- 2,800천원×운영기관(학교) 수
- 2025년 5기관, 2026년~2027년: 7기관, 2028년~2029년 12기관으로 확대

※ (산출기초) 1기관 2,800천원

- 3월~ 12월(10회)
- 강사수당(일반강사2급) (기본) 120,000원×10회=1,200,000원
(초과) 60,000원×10회=600,000원
- 운영비 100,000원×10회=1,000,000

○ 지역서점 협의체 운영

- 400천원×운영기관(학교) 수
- 13기관(도교육청 1기관, 지역협의체 5~12기관)

※ (산출기초) 1기관 400천원

- 연 2회
- 20,000원×10명×2회=4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16,400	22,800	22,800	38,800	38,800	139,600
충청북도교육청 지역서점활성화 진흥		16,400	22,800	22,800	38,800	38,800	139,600
재원 조달		16,400	22,800	22,800	38,800	38,800	139,6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6,400	22,800	22,800	38,800	38,800	139,6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